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4. 1. 공포, 4. 1, 4. 11, 4. 1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 폐지에 따라 노사관행개선과의 기능을 노동개혁총괄과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전남지방노동위

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9항 중 “2025년 4월 12일”을 “2026년 4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623”을 “626”으로, 일반직 계 “617”을 “620”으로, 행정사무관 “113”을 “115”로, 행정주사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25”를 “628”로, 일반직 계 “619”를 “622”로, 행정사무관 “131”을 “133”으로, 행정주사 “51”을 “52”로 한다.
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2025년 4월 10일”을 “2027년 4

월 10일”로 한다..

별표 20 제8호를 다음과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삭제한다.

8. 제28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4월 12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3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4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 별표 5, 6 및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2	90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1	89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5	24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5	26	109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4	11	7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1	9
행정전문관	4	4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6	94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5	93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5	24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6	28	10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7	12	7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7	2	5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8	1	7
행정전문관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⑦ (생략)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노동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u>
<u>14. (생략)</u>	<u>16. (현행 제14호와 같음)</u>
⑨ ~ ⑰ (생략)	⑨ ~ ⑰ (현행과 같음)
<u>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① 노사관행개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삭 제></u>
<u>②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u>	
제28조(한시정원) ① · ② 삭제	제28조(한시정원)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⑧ 삭제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⑨ ----- ----- -----

에 따라 <u>2025년 4월 12일까지</u>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u>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u> ⑪ (생략)	----- <u>2026년 4월 12일</u> ----- ----- -----. <u><삭 제></u> ⑪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3</u>	<u>626</u>	+3
·	·	·	
·	·	·	
일반직 계	<u>617</u>	<u>620</u>	+3
·	·	·	
·	·	·	
행정사무관	<u>113</u>	<u>115</u>	+2
·	·	·	
·	·	·	
행정주사	<u>65</u>	<u>66</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5</u>	<u>628</u>	+3
•	•	•	
•	•	•	
일반직 계	<u>619</u>	<u>622</u>	+3
•	•	•	
•	•	•	
행정사무관	<u>131</u>	<u>133</u>	+2
•	•	•	
•	•	•	
행정주사	<u>51</u>	<u>52</u>	+1
•	•	•	
•	•	•	